

재단법인 한국해양대학교발전기금 정관

개정 : 87. 9. 21	개정 : 92. 5. 1	개정 : 94. 5. 19	개정 : 95. 2. 15
개정 : 96. 1. 19	개정 : 99. 3. 18	개정 : 00. 2. 29	개정 : 01. 2. 13
개정 : 01. 9. 26	개정 : 02. 2. 1	개정 : 02. 11. 20	개정 : 03. 2. 12
개정 : 04. 2. 21	개정 : 06. 3. 27	개정 : 06. 4. 24	개정 : 07. 4. 4
개정 : 07. 10. 8	개정 : 08. 1. 31	개정 : 09. 3. 27	개정 : 10. 3. 30
개정 : 11. 3. 7	개정 : 12. 2. 28	개정 : 13. 2. 14	개정 : 14. 3. 07
개정 : 15. 2. 11	개정 : 17. 2. 24	개정 : 19. 1. 31.	개정 : 20. 1. 17.
개정 : 21. 12. 13	개정 : 22. 3.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이하 “대학교” 라 한다) 학생 장학사업, 교수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수 저서출판지원사업 및 기타 본 대학교 면학환경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해양대학교발전기금(이하 “법인” 이라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생의 장학사업
2.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3. 교직원의 연수지원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5. 면학환경발전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6.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4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은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I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II 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의 제3항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12인
2. 감 사 :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상임이사 및 제19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법인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대학교 기획처장이 된다.

② 이사 중 6명은 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총동창회 회장, 총동창회 부산지부 지부장이 된다.

③ 기타 이사 중 5명은 대학교 교수 1명, 동문 1명, 대학회계 회원 1명, 회계법인 및 금융기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와 이사는 출석이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와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과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와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 대학교 학보, 대학교 소식지 또는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교수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수 저서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5. 면학환경발전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명단 생략)

제37조(사무국) ①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직원(사무국장 포함)을 둔다. 다만, 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교 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와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시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1년 3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변경이전의 이사장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4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1987년)

(단위 : 원)

재산명	수 량	지 번	지 목	지 적	평가액	비고
현 금 (예치금)					58,000,000	
채 권					17,000,000	
합 계					75,000,000	

(별지목록 II)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9,493,322,649	
부 동 산	임야 504,595㎡	827,710,230	
계		10,321,032,879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단위 : 원)

재 산 명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 적	평가액	비고
현 금(예치액)					9,493,322,649	
부 동 산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산46	임야	66,645㎡	91,303,65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산57	임야	312,198㎡	521,370,66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산63	임야	125,752㎡	215,035,920	
합 계					10,321,032,879	

재단법인 한국해양대학교 발전기금 운영지침

제정 : 95. 2. 15	개정 : 98. 1. 23	개정 : 99. 2. 9	개정 : 00. 1. 25
개정 : 01. 1. 20	개정 : 02. 1. 16	개정 : 03. 2. 5	개정 : 04. 2. 4
개정 : 04. 11. 16	개정 : 06. 4. 24	개정 : 07. 1. 23	개정 : 07. 9. 14
개정 : 07. 12. 28	개정 : 09. 2. 24	개정 : 10. 2. 9	개정 : 11. 1. 25
개정 : 12. 1. 18	개정 : 13. 1. 30	개정 : 14. 1. 29	개정 : 14. 12. 24
개정 : 15. 2. 26	개정 : 16. 2. 3	개정 : 17. 2. 3	개정 : 18. 2. 9
개정 : 19. 1. 31	개정 : 20. 4. 8	개정 : 21. 3. 2	개정 : 22. 2.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한국해양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 라 한다) 정관 제4조(사업)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세부내용)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업 종 류	사 업 세 부 내 역
장 학 사 업	소천장학금, 태산장학금, 초계장학금, 해봉장학금, 능과장학금, 신태범장학금, 세원장학금, 도선사협회장학금, 흥인정장학금, 상보장학금, 동송장학금, 배순태장학금, 시명선장학금, 황관성장학금, 마상근장학금, 삼호장학금, 대상장학금, 새한장학금, 대한해운장학금, 산호장학금, 공과대학장학금, 한해장학금, 박제이슨장학금, 이조장학회장학금, 은성O&C장학금 등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특정과제연구지원비, 교수해외연구지원비, 일반연구지원비,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지원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지원비, 국내학술지 논문게재지원비, 대외사업유치 지원비, 기타 학술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지원비 등
교직원의 연수지원사업	교수해외 연구·연수지원비, 직원 해외연수지원비
면학환경 발전을 위한 사업	교직원의 연구지원비, 시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비, 대학발전후원사업, 대학발전을 위한 업무추진경비 등

제3조(사업비 구성비율) 당해연도 사업비 예산은 기금별로 편성하고 그 편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기금구분	사업구분	구성비율(%)	비 고
일반기금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 기타사업	100	
소천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3억
태산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1억
초계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3억
해봉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3억
능파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10억
세원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10억
신태범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1억
도선사협회 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2억
홍인정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2억
상보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3억
동송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3억
배순태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토지4.4억
시명선연구·장학기금	연구·장학사업	100	6억
황관성연구·장학기금	연구·장학사업	100	1억
마상곤연구·장학기금	연구·장학사업	50	5억
		100	5억
삼호연구·장학기금	연구·장학사업	100	1억
태상장학·연구기금	장학사업	100	2억2천5백
새한연구·장학기금	연구·장학사업	100	1억
산호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5천
대한해운 연구·장학기금	연구·장학사업	100	5억

기금구분	사업구분	구성비율(%)	비 고
제4대총장조성 (비목적성)기금	학술진흥 및 대외사업 유 치 지원 사업	100	8억
공과대학장학금	장학사업	100	8천3백6만3백4십9원
한해장학금	장학사업	100	1억1천2십6만2천3백원
박제이슨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3억
이조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9천5백
은성O&C장학기금	장학사업	100	8천

제4조(당해연도 사업확정·집행 및 회계직 운영) ① 당해연도 세부사업은 학술진흥회 정기이사회에 예산·결산심의시 확정하며, 예산의 범위내 집행은 상임이사에게 위임한다.

②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2인을 둔다

③ 간사는 본 대학교의 전략사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전략사업과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④ 회계계약관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상임이사로 하고 회계출납관은 간사로 한다.

제 2 장 장 학 금

제5조(장학금종류) 장학금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천장학금
2. 태산장학금
3. 초계장학금
4. 해봉장학금
5. 능파장학금
6. 세원장학금
7. 신태범장학금
8. 도선사협회장학금
9. 흥인정장학금
10. 상보장학금
11. 동송장학금
12. 배순태장학금

13. 시명선장학금
14. 황관성장학금
15. 마상곤장학금
16. 삼호장학금
17. 대상장학금
18. 새한장학금
19. 대한해운장학금
20. 산호장학금
21. 공과대학장학금
22. 한해장학금
23. 박제이슨장학금
24. 이조장학금
25. 은성O&C장학금

제6조(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금 지급기준) ① 학비보조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국해양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총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한다.
 ② 장학생자격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 학 금 종 류	장 학 생 자 격	지 급 기 준
소 장 학 금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분명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해사대학장 및 대학원장, 해운경영학부장 또는 해운경영전공주임이 추천한자 (대학원 학생은 해사대학 대학원생에 한함)	졸업시까지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하인자 당해학기 및 한국해양대학교장학금규정 제9조 해당자 제외)
태 산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초 계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하인 자 및 한국해양대학교장학금규정 제9조 해당자 제외)
해 봉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 및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대학원생은 해사대학 대학원생에 한함)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하인 자 및 한국해양대학교장학금규정 제9조 해당자 제외)

장 학 금 종 류	장 학생 자격	지 급 기 준
능 파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하인 자 및 한국해양대학교장학금규정 제9조 해당자 제외)
세 원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공학계열 대학원생에 한함)	졸업시까지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하인자 당해학기 및 한국해양대학교장학금규정 제9조 해당자 제외)
신 태 범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도 선 시 협 회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해사대학장이 추천한 자(해사대학 학생에 한함)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홍 인 정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항해, 기관계열 학생에 한함)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상 보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금액 내외 지급(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하인 자 및 한국해양대학교장학금규정 제9조 해당자는 제외)
동 송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배 순 태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해사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하인 자 및 한국해양대학교장학금규정 제9조 해당자 제외)
시 명 선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황 관 성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마 상 곤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삼 호 장 학 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장학금 종류	장학생 자격	지급 기준
태상장학금	해사대학 또는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새한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대한해운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산호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해사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공과대학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한해장학금	해사대학 항해계열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박제이슨장학금	해사대학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7이상인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인성이 특별히 훌륭한 모범학생 2명 - 성적이 3.0이하 또는 징계(학칙 99조 및 100조)를 받으면 장학금 지급정지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이조장학회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진취적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은성O&C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진취적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해사대학 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금액 내외 지급

③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④ 신입생 특전장학금으로 전체수석입학자는 4년간 매년 200만원, 전체차석입학자, 단과대학수석입학자, 수능성적우수자는 4년간 매년 1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류 [별첨 제1호 서식]을 구비하여 총장에게 신청하고, 총장은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생의 결정) 장학생의 결정은 총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확정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① 장학금의 지급은 총장의 요청에 의해 일괄 지급한다.

② 삭제

제 3 장 연 구 비

제10조(연구비의 지급신청) 한국해양대학교 교직원이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이사장에게 지급 의뢰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1부.
2. 연구비사용계획서 1부. [별첨 제3호]
3. 연구비지급청구서 1부. [별첨 제4호]

제11조(연구비의 지급결정) 이사장은 연구비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본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연구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액 및 지급기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의 지급방법) 연구비의 지급은 일시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자는 결정된 연구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의 사용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서와 변경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가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의 지급중지)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한국해양대학교 교직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한 때
4. 지시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② 이사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6조(연구진행 및 보고)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에게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연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연구실적 보고서에 연구논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종합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외단기연수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자는 연구논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부 칙 -

이 운영지침은 1995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1998년 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1999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0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1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2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3년 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4년 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4년 1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6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7년 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7년 9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09년 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0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1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2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3년 1월 30 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4년 1월 29 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4년 1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5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6년 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7년 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8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19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20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21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운영지침은 2022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장 학 증 서

한국해양대학교
학과 년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을 2000년도 1학기 소천장학생으로 선정하고 본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소 천 장 학 기 금
(재)한국해양대학교학술진흥회이사장

강 석 천
김 순 갑

[별첨 제3호 서식]

연구비사용계획서

(단위 : 원)

연구책임자	소 속	직 명	성 명	공동연 구원수	연구보 조원수
	대 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연구비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총지원금액	기관지원금액	업체지원금액	기타지원금액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합 계					

붙 임 : 세부산출내역서 및 연구수당지급내역서 각 1부.

본인은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지침 및 본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에 의거
연구비를 사용하겠습니다.

. . .

연구 책임자: (인)

연구비관리 기관장 귀하

[별첨 제3-1호 서식]

세 부 산 출 내 역 서

()차년도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 다년도 연구과제는 연도별로 기재하고 사용예정시기는 가능한 분기별로 나누어 기재.

[별첨 제3-2호 서식]

연구수당 지급내역서

1. 연구원별 계좌

연구책임자	금 융 기 관		계 좌 명 의		계 좌 번 호
공동연구원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본인날인
					(인)
					(인)
연구보조원	학 위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본인날인
					(인)
					(인)
					(인)
					(인)
					(인)

2. 지급내역

(단위 : 원)

연구원수	성 명	월지급액	지급월수	총지급액	지급요청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예시) 0 0 0	150	3월-10월(8개월)	1,200	3월,6월,9월
합 계					

※ 금융거래기관은 농협 및 우체국중 택일하되 입금오류 확인가능한 농협 우선

※ 연구수당은 가능한 분기별로 지급

[별첨 제4-1호 서식]

()차 연구수당 세부지급 청구서

(단위 : 원)

구 분	성 명	총예산액	총수령액	월지급액	()월분	금회총청구액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예시) 0 0 0	3,000	2,400	200	6,7,8월분	600
합 계						

※ 연구수당 : 연구활동비, 인건비등

※ 지급청구서의 연구수당 청구내용(총예산액, 총수령액, 금회총청구액)과 일치해야함.

[별첨 제5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본인은 (재)한국해양대학교 학술진흥회 연구비를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성실히 사용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재)한국해양대학교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